

#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0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3월 4일  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사업 수혜 대상이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비인기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,
-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본연의 역할을 넘지 않도록 자문 사항에 있어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추천만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면서,  
  
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서 장애 청소년 유망주도 논의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청소년 유망주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함(안 제4조 제1항제1호).
- 나. 위원회 자문 사항에 있어 자문 역할을 넘지 않도록 수정함(안 제5조제1항제1호).

다. 위원회 위원 추천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함(안 제5  
조 제4항 제3호).

#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장학금”을 “훈련비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지원”을 “추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체육회”를 “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”로 한다.

**< 수정안 조문대비표 >**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사업)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<u>장학금</u> 지원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훈련비</u>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<u>지원</u>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체육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체육회</u>가 추천하는 사람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5조(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추천</u>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체육회</u> 및 <u>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</u>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비인기 스포츠 종목”이란 사회적 관심도 및 인지도가 낮은 스포츠 종목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종목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 유망주”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 관내 학교장의 추천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
2.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시설·장비 지원
3. 비인기 스포츠 종목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
4. 비인기 스포츠 종목 대회 및 행사 개최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,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자문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추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2.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3.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으로서 하고, 부위원장은 위

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2. 서울특별시 체육 담당 부서 공무원
3.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
4. 체육 분야 교수 및 전문가
5. 그 밖에 체육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, 각급 학교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